

# 규약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법인명]

## 제1장 총칙

동의로 갈음한다.

### 제1조(목적)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자금을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운용지시를 행하여,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급여를 지급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본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본 제도가 실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실시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명칭 : \_\_\_\_\_

주소 : \_\_\_\_\_

대표이사 : \_\_\_\_\_

### 제3조(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본사)

명칭 : \_\_\_\_\_

주소 : \_\_\_\_\_

### 제4조(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① 본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② 본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위원장)을 말한다.

③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별첨1의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본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본 규약에 대한

###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② 제1항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6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다음의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대표이사 : 유상호

② 전항의 자산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제7조(가입대상자의 범위)

본 제도의 가입대상자는 \_\_\_\_\_의 실시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 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제8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가입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실시사업장에 고용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때
2. 근무하는 사업장이 본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때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③본 제도의 실시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최근 퇴직금 정산지급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제4장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제11조(부담금의 부담)

①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산정금액 중 큰 금액(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10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다.

②가입자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신청에 의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가입자부담금의 변경은 가입자가 신청한 날의 다음 납입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12조(부담금의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을 매분기 말일까지 1회(매년 3,6,9,12월)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의 최초 납입일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의 정함에 따른다.

②사용자는 매분기 사용자부담금 납부시 가입자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한다.

③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 미납한 부담금(이하 “미납부담금”이라 한다)을 가입자 자격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퇴직 시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미납부담금은 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당월의 근무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한다.

#### 제9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실시사업장이 본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10조(가입기간)

①본 제도의 가입기간은 일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본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고 본 제도의 전후의

#### 제13조(부담금의 미납시 처리절차)

①사용자가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하여야 한다.

1.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사실

2. 3개월간의 연장기간, 연장기간동안의 지연이자(연 3.00%)

3. 연장기간 종료후의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연 5.00%)

4. 1년 이상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도의 중단

5.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장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용방법의 선정 및 제시)

①운용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3. “신탁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방법

②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6.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③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제시된 운용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운용방법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운용방법과 관련한 계약의 상대방이 없거나, 또는 당해 운용방법의 약관 및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입자 교육시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
2.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이자, 배당, 기타의 이익분배 방법
4. 과거 5년간(당해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5년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운용 실적
5. 수수료, 기타 비용 및 그 부담 방법
6. 예금자보호의 적용 및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해당 여부
7. 기타

②운용관리기관은 전항의 정보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1. 서면(우편, 안내서류 등)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전달(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한 공지 등)
3. 사내 게시판에 게시

③운용관리기관은 1항의 운용방법별 정보를 가입자 교육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운용방법이 추가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한다.

### 제16조(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을 위해 스스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배분비율을 결정한 후 그 내역을 운용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운용방법변경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도환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④운용방법의 설정 및 변경은 운용관리기관의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남는 적립금은 운용관리기관 또는 자산관리기관이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급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기관에게 지급지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 제1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운용관리기관은 매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당해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직전 및 해당 사업년도 말 현재의 개인별 적립금액
2. 해당 사업년도말 현재 선정한 운용방법별 지분평가액
3. 해당 사업년도에 부담한 부담금액
4. 해당 사업년도에 가입자가 개인별 적립금액으로부터 부담한 비용 및 수수료
5. 해당 사업년도의 운용수익(이자 및 배당 등) 및 운용수익률

② 전항의 운용현황의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의 동의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 제6장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제18조(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①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는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내에서 수급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 제1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가입자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에게 개인별 적립금에 대한 중도인출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운용관리기관은 전항의 신청에 의해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지

### 제20조(급여의 종류)

본 제도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연금
2. 일시금

### 제21조(수급요건)

①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연령이 55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55세까지 운용관리기관이 운용하는 개인퇴직계좌(IRA)에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치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거치연금의 지급금액은 연금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전 2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장 급여의 지급절차

### 제22조(급여의 지급절차)

①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를 경유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수급요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실시사업장의 소멸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 청구가 곤란한 경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운용관리기관에게 급여를 청구하여 수급요건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사용자는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체없이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거나 운용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용관리기관은 수급요건의 확인 후 급여가 청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기관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급여의 지급 사유 및 지급 기한)

- ①급여의 지급은 가입자 자격의 상실(규약 9조)시, 제도의 폐지 및 중단(규약 26조)시에 지급한다.
- ②급여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장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제24조(계약의 체결)

- ①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실시사업장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것
  2.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할 것
  3.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법령에 따라 행할 것
  4. 운용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감독책임이 명시될 것
  5. 기타 규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것

- ②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과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사용자를 통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일 것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일 것.

#### 제25조(계약의 해지 사유)

사용자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의 중요한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 제26조(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전)

- ①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이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적립금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도의 폐지 · 중단 사유)

- ①본 제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해 폐지된다.
  1. 노사가 본 제도의 폐지에 합의한 경우(임의 폐지)
  2. 이 사업의 소멸 또는 도산하는 경우
  3. 본 규약의 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②본 제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해 중단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중단명령
  2. 부담금 납입기일로부터 미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제28조(제도의 폐지 · 중단 절차)

- ①사용자는 본 제도의 폐지 · 중단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9조(제도의 폐지 · 중단시의 처리)

- ①본 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본 제도에 가입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한다. 또한 중간정산금액은 본 제도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비율을 재계산한 후 그 비율대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②본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제도 운영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 제10장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제30조(교육의 실시)

①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 ·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사용자는 전항의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교육의 위탁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교육업무의 일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전문교육기관인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31조(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된 장소에서 공개 설명회 및 세미나
2.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3.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기타 운용관리기관과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무와 관련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제29조에 의한 가입자 교육을 운용관리기관에 위탁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별도로 부담한다.

### 제33조(규약의 변경)

①사용자는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본 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제도의 변경)

①사용자가 본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본 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적립된 적립금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단, 제도변경시점에 미납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③가입자인 근로자가 본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 (법령의 적용)

본 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약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대해서는 법, 영, 규칙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 (사업년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 제11장 기타

### 제32조(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①본 제도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되는 비용 및 자산관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명 (명판)	<input type="text"/>
대표이사	직인
회사명	<input type="text"/>
근로자 대표	직인 생략